

IFRS Brief

IFRS Newsletter



IASB 주요 프로젝트 진행 현황

IASB가 2019년 2월말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의 진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현재상황	진행계획	
		6개월 내	6개월 이후
기준서 등			
공시개선 - 공시의 원칙	분석 중	프로젝트요약 발표	
공개초안			
요율규제활동	분석 중	토론서 또는 공개초안 발행	
주요재무제표	분석 중	토론서 또는 공개초안 발행	
토론서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	분석 중		토론서 발행
영업권과 손상	분석 중	토론서 발행	
동적 위험관리	분석 중	주요 모형 발표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토론서에 대한 의견수렴 중	의견수렴결과 검토	

Contents

IFRS 뉴스레터 2019년 3 · 4월호

IASB 주요 프로젝트 진행 현황 1

Global 동향 2

I. 2019년 1월, 2월 IASB meeting 기타 논의사항

II. 2019년 1월, 2월 IFRIC meeting 주요내용 요약

IFRS 실무적용 해설 7

금융보증계약의 보유자 회계처리

Global 동향

I. 2019년 1월과 2월 IASB meeting 기타 논의사항

IASB의 주요 프로젝트 외에 2019년 1월과 2월의 IASB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FRS Implementation Issue

(1) [IAS 12] 법인세 – 하나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이연법인세

IASB는 지난 2018년 10월에 리스(사용권자산/리스부채)나 복귀의무(유형자산/복구충당부채)와 같이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인식하는 거래에서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모두 발생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하는 경우, IAS 12 문단 15 및 문단 24에 따른 최초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이번 회의에서는 이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 IAS 8 '회계 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를 적용하여 제안된 개정사항을 소급적으로 적용함. 다만, IAS 12에 따라 전환일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허용됨 (경과 규정의 예외적용사항)
- ✓ IFRS의 최초채택기업에게 경과규정의 예외적용사항을 제공하는 것 즉, 최초채택기업이 IFRS 전환일에 IAS 12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허용됨
- ✓ 이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는 것을 허용함

IASB는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2019년 2분기에 개정사항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II. 2019년 1월과 2월 IFRIC meeting 주요내용 요약

2019년 1월, 2월의 IFRS 해석위원회에서 논의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FRS IC Agenda decisions

2019년 1월, 2월 해석위원회에서 결정한 Agenda decision은 다음과 같다.

(1)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법인세가 아닌 세금과 관련된 선급금

해석위원회는 IAS 12 법인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세금과 관련된 선급금에 대한 회계처리 질문을 받았다.

사실관계

- ✓ 회사는 과세당국과 분쟁상태에 있음
- ✓ 회사는 분쟁대상이 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결과적으로 IAS 37에 따른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과세당국의 납부 요구에 따라 분쟁금액을 자발적으로 과세당국에 납부함

- ✓ 회사는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 그 금액을 환급 받을 권리를 갖지 않음
- ✓ 분쟁해결 결과에 따라 회사는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음

해당 선급금이 자산이나 우발자산인지 혹은 둘 다 아닌지 여부

해석위원회는 해당 선급금을 자산으로 본다면, 그 자산이 어떤 IFRS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 8을 적용하여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와 이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였다.

해석위원회는 해당 선급금은 현금을 회수하거나 납부할 세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권리 즉,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권리를 기업이 갖고 있고, 그 지급액은 가능성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개념 체계에 따른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우발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해당 선급금을 회사가 자발적으로 납부하였는지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해석위원회는 제시된 상황에서 회사가 과세당국에 선급금을 지급할 때 기업의 자산이라고 결론내렸다.

해당 선급금에 대한 인식, 측정, 표시와 공시

해석위원회는 해당 자산에 대해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서가 없으므로, 기업은 IAS 8의 문단 10-11을 적용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IFRS의 요구사항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기업이 법인세가 아닌 세금과 관련된 선급금에 대해 회계처리 할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이슈를 기준서 제정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약속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수행의무 식별

해석위원회는 증권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고객의 상장 서비스에 대한 IFRS 15에 의한 수익인식에 있어 최초 상장서비스(initial listing service)를 상장유지 서비스(ongoing listing service)와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 ✓ 증권거래소는 고객에게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와 거래소에 상장된 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청구함
- ✓ 증권거래소는 계약개시일과 계약개시일과 가까운 시기에 증권 거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
 - 신규 상장 신청 회사에 대한 실사를 수행
 - 고객의 상장 신청서 검토
 - 신규 증권을 위한 종목번호와 종목명(ticker) 발행
 - 거래시장에 상장 및 등록 처리
 - Order book에 증권 게재
 - 증권 등록일에 dealing notice 발행

해석위원회는 수행의무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를 고객에게 청구 할 때, 계약의 개시일이나 개시일과 가까운 시기에 고객에게 약속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지, 혹은 계약의 개시일이나 계약의 개시일과 가까운 시기에 회사가 수행하는 활동이 계약 준비활동을 나타내는 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제시된 사실관계에서 거래소가 계약의 개시일 혹은 그와 가까운 시기에 수행하는 활동은 고객과 계약된 재화나 용역(즉, 거래소에 증권을 상장시키는 서비스)을 이전하기 위해 수행하는 준비 활동이라고 보았으며, 고객에게 이전된 상장서비스(listing service)는 고객의 상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최초 상장 시와 상장 이후 동일하게 제공되므로 제시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증권거래소가 계약의 개시일에 고객에게 상장서비스 이외 다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지는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IFRS 15의 원칙과 요구사항이 기업이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된 재화나 용역에 대해 수행의무를 식별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이슈를 기준서 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3) [IAS 27] 별도재무제표 - 원가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 투자의 일부 처분

해석위원회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질의를 받았다.

사실관계

- ✓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를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 ✓ 회사는 현재 종속기업(피투자자)에 대한 투자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주식은 IAS 32 '금융상품 : 표시'문단 11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분상품임
- ✓ 회사는 후속기간 중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식 일부를 처분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 하였음. 처분 이후 회사는 피투자자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

질의사항

- ✓ Question A : 회사가 처분 후에도 보유하고 있는 잔여주식에 대해 IFRS 9 '금융상품'를 적용하여 공정가치_기타포괄손익 측정 금융상품으로 분류가능한지(문단 4.1.4¹적용) 여부
- ✓ Question B : 회사가 피투자자의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에서 잔여주식은 공정가치로 재측정 되는데, 기존 장부금액인 취득원가와 재측정된 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표시할지, 기타 포괄손익으로 표시할지 여부

1 IFRS 9.4.1.4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 투자'에 대하여는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최초 인식시점에 선택할 수도 있다.

검토의견

〈Question A〉

IAS 27 '별도재무제표' 문단 9에서 별도재무제표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자산을 제외하고 적용할 수 있는 모든 IFRS 기준서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의에서 투자주식의 일부를 처분하는 거래 이후 피투자자는 회사의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이 아니다. 따라서 회사는 피투자자의 잔여주식에 대해 IFRS 9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다.

해석위원회는 위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에서 잔여주식이 단기매매항목이 아니라면 잔여주식이 IFRS 9 문단 4.1.4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잔여주식에 대해 처음 IFRS 9을 적용할 때(즉,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시점)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Question B〉

회사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시점의 잔여주식 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상의 수익 또는 비용의 정의를 충족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다른 기준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한 IAS 1 문단 88에 따라 해당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표시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는 회사가 잔여주식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는 지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지와 무관하다. 또한 해석위원회는 이러한 결론이 유사한 회계논제를 다루고 있는 연결재무제표상 유의적 영향력 상실 회계처리(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22(b)2), 별도재무제표상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IAS 27 문단 11B3)와도 일관된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질의의 회계처리를 하는데 다른 기준서의 원칙과 규정이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이슈를 기준서 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4) [IAS 27] 별도재무제표 - 원가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 투자의 단계적 취득

해석위원회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의 단계적 취득 시 회계처리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질의를 받았다.

- 2 IAS 28.22(b)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지분이 금융자산인 경우, 기업은 잔여 보유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중략) 기업은 다음 (가)와 (나)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가)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 처분으로 발생한 대가의 공정가치
 - (나) 지분법을 중단한 시점의 투자자산의 장부금액
- 3 IAS 27.11B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으로 분류가 중단되거나 투자기업이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지위가 변동된 시점부터 지위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다.
 - (1) 투자기업으로 분류가 중단될 때,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문단 10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지위 변동일이 간주 취득일이다. 문단 10에 따라 투자자산을 회계처리할 때 간주 취득일의 종속기업 공정가치는 간주 이전대가를 나타낸다.
 - (2) 기업이 투자기업이 되는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종속기업에 대한 종전의 과거 장부금액과 투자자의 지위 변동일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종전에 기타포괄손익인식항목으로 인식되었던 종속기업에 대한 손익에 따른 누적금액은 지위변동일에 그 종속기업을 마치 처분한 것처럼 회계처리한다.

사실관계

- ✓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를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 ✓ 회사는 현재 다른 기업(피투자자)의 보통주를 취득하였으며, 피투자자가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으로 분류되지 아니므로 IFRS 9 을 적용하여 최초 투자를 회계처리 하였음
- ✓ 회사는 후속적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음. 즉, 피투자자는 회사의 종속기업이 되었음

질의사항

- ✓ Question A : 지배력 획득시점에 종속기업 주식 취득원가를 다음 중 무엇으로 결정하는지
 1.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 최초 투자지분의 공정가치와 추가 취득하는 지분에 대한 대가의 합계(공정가치 간주원가법)
 2. 최초 투자지분의 대가와 추가 취득하는 지분에 대한 대가의 합계(누적원가법)
- ✓ Question B : 누적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회사가 피투자자의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의 최초 투자지분의 공정가치와 취득원가의 차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Question A〉

해석위원회는 위 두 가지 접근법이 단계적 취득을 바라보는 다음 두 가지 관점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았다.

1. 최초 투자지분과 추가 취득하는 지분의 대가를 피투자자의 지배력과 교환
2. 최초 투자지분을 유지한 채로 추가 지분을 구매

해석위원회의 논의 결과, IFRS 기준서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위 두 가지 접근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해석위원회는 결정된 방법을 모든 단계적 취득 거래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회사는 단계적 취득 거래가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면, 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117-124에 따라 선택한 방법을 공시해야 한다.

〈Question B〉

누적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의 최초 투자지분 대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상의 수익 또는 비용의 정의를 충족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회사가 지배력을 획득하기 이전에 최초 투자지분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하였는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다른 기준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한 IAS 1 문단 88에 따라 해당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다른 기준서의 원칙과 규정이 회계처리를 위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이슈를 기준서 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FRS 실무적용해설

〈실무적용이슈 No.67〉



금융보증계약의 보유자 회계처리

금융보증계약 보유자(일반적으로 채권자)의 회계처리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준서는 없다. 아래의 내용은 “KPMG insights into IFRS”에서 제시하는 회계처리를 설명한다.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는 금융보증계약 발행자의 회계처리를 다루는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이하 ‘K-IFRS 1109’)에 규정되어 있다.

1. 금융보증계약의 정의

K-IFRS 1109에서는 금융보증계약을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 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금융보증계약의 법적 형식은 신용장, 신용손실계약, 보험계약 등으로 다양할 수 있으나, 법적 형식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금융보증계약의 정의에 따르면 금융보증계약은 다음 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① 보증 대상이 되는 의무가 채무상품이다.
- ② 계약의 보유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실만을 보상받는다.
- ③ 계약의 보유자는 실제로 발생한 손실 이상의 보상을 받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설명한다.

① 보증 대상이 되는 의무가 채무상품이다.

K-IFRS 1109에서는 금융보증계약의 정의에서 언급된 채무상품이 무엇인지 명확히 언급하지 않는다. 채무상품을 좁게 해석한다면, 기본대여계약(즉, SPPI⁴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과 일관된 비파생 채무상품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특정 채무자가 지급기일에 상환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가 해당 기일에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의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는 파생상품이나 복합계약도 금융보증계약에서 언급하는 채무상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도 있다.

4 SPPI : Solely 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의 지급으로만 구성

[사례 1] 복합 계약

<현황>

투자자 Z는 주가 지수 변동에 기초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구조화채권을 매입하였다. Z는 또한 은행으로부터 구조화채권 발행자가 만기일에 원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이 Z에게 부족분을 지급하는 보증을 제공받았다.

<분석>

이 계약은 회사의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가 보증 대상인 채무상품을 기본대여계약에 해당하는 비파생 채무상품만으로 보는 경우, 이 계약에는 주가 지수 연계 수익이라는 파생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반면, 특정 채무자가 지급기일에 상환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가 해당 기일에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의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는 복합계약도 채무상품으로 보는 회계정책을 선택한 경우라면 이 계약은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한다. 만약 은행이 주가 지수 하락에 따라 투자자 Z가 입은 손실까지 보상해주는 계약이라면 이 계약은 금융보증계약이 아니라 파생상품이 될 것이다.



② 계약의 보유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실만을 보상받는다.

금융보증계약의 두 번째 조건은 채무자가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채무상품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실만을 보상받는다. 기회손실이나 공정가치 손실은 금융보증계약에서 말하는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K-IFRS 1109에서는 발생 손실의 보상을 위해 언제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언급하지 않는다. KPMG의 견해로는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지급기일이 경과한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가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발행자에게 즉시 변제하는 경우에도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금융보증계약의 정의에서는 보증계약 보유자가 보증계약의 대상이 되는 채무상품을 자산으로 보유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유자가 채무상품을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더라도 지급기일에 채무자의 상환 실패로 인해 보유자가 해당 채무상품으로부터 입은 실제 손실을 보상하는 계약에 해당한다면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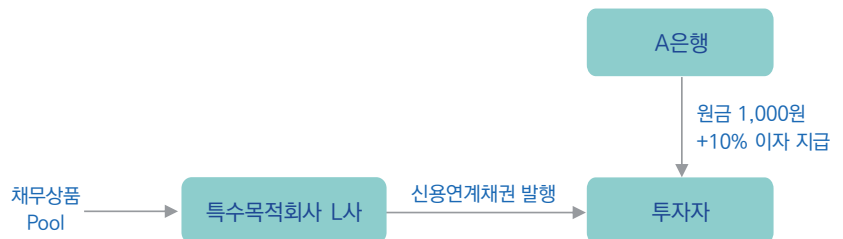
다음 사례는 이러한 경우를 설명한다.

[사례 2] 신용연계채권

<현황>

특수목적회사 L은 투자자에게 원금 1,000원, 이자율 10%인 신용연계채권을 발행하였다. L사는 보유한 기초자산(채무상품)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하여 투자자에게 분배한다. L사는 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기초자산을 매각할 수 없다. 계약에 따르면 L사는 기초 자산에서 수취하는 현금을 한도로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A은행은 투자자에게 원금 1,000원과 이자 10%를 모두 지급하는 보증계약을 발행하였다. 은행은 투자자가 L사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부족분을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추후 L사로부터 부족분을 일부라도 수취하는 경우 이를 은행에 다시 지급해야 한다.



<분석>

사례의 보증계약은 금융보증계약에 해당한다. 투자자는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정 채무자(즉, 기초자산(채무상품)의 특정채무자 또는 L사)의 지급실패로 실제 손실을 입을 수 있고, 은행은 그 실제 손실을 보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기초자산에 변동금리채권이 포함되어 있어 투자자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해 계약에 따른 이자 10%를 모두 받지 못한 경우 은행이 그 부족분도 보상하는 것이라면 이 계약은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기타 특정 변수(예 : 이자율, 신용등급)의 변동에 따른 지급을 요구하는 보증계약은 K-IFRS 1109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에 해당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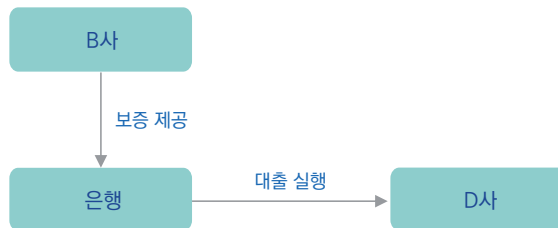
③ 계약의 보유자는 실제로 발생한 손실 이상의 보상을 받지 않는다.

금융보증계약의 세 번째 조건은 보유자가 채무상품에서 발생한 손실보다 큰 금액을 보상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손실의 100%를 초과하는 지급 조건이 있는 경우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CDS(Credit default swap)는 보유자가 특정 채무상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액을 보유자에게 지급하는데, 이는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며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된다.

[사례 3]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

〈현황〉

A은행은 D사에 대출을 실행하였다. B사는 D사가 지급기일 이후 30일 이내에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 D사를 대신해서 은행에 대출을 상환하는 보증계약을 발행하였다. 은행이 D사로부터 후속적으로 대금을 상환받는 경우 은행은 B사에 이를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 즉, 은행은 대출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을 보유할 수 없다.



〈분석〉

이 사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한다.

- 보증대상이 되는 의무가 채무상품이다.
- 계약의 보유자는 채무자가 지급 기일에 지급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는다. 지급기일 이후 30일이 지난 시점에 은행은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B사로부터 대금을 수취한다. 그러나 추후 D사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을 다시 B사에 즉시 변제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은행은 실제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받는다고 볼 수 있다.
- 보유자는 실제로 발생한 손실보다 큰 금액을 보상받지 않는다. D사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을 다시 B사에 즉시 변제하는 조건에 따라 은행은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받지 않는다.

〈사례의 변경〉

위 사례에서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고, B사가 D사의 신용등급 변동에 기초하여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점만 다르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에는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B사는 D사의 지급 실패로 인해 은행이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B사와 은행은 해당 계약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2. 금융보증계약 보유자(채권자) 회계처리

(1) 금융보증계약의 분리 여부 판단

채무상품의 계약 조건에 금융보증계약 특성이 포함되어 있거나 채무상품 발행자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금융보증계약이 채무상품에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보유자는 금융보증계약이 채무상품의 일부인지 채무상품과 별도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계약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관련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

- 보증이 암묵적으로 채무상품 계약조건的一部分이다.
- 채무상품 계약을 다루는 법규에서 보증을 요구한다.
- 보증계약이 채무상품과 동시에, 채무상품을 고려하여 체결된다.
- 보증계약 또는 해당 계약이 보증하는 신용위험이 각각 독립적으로 새로운 보유자에게 할당될 수 있다.
- 채무자의 지배회사 또는 채무자가 속한 연결그룹 내 다른 회사가 보증계약을 제공한다.

만약 금융보증계약이 채무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체결되고 채무상품의 일부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급할 프리미엄은 금융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거래원가이다. 따라서 적절하다면 금융자산의 최초 장부금액과 유효이자율 계산 시 이를 포함한다.

다음은 금융보증계약이 채무상품의 일부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타내는 사례이다.

[사례 4] 금융보증 - 활성시장 공시가격이 있는 사채

〈현황〉 B사는 활성시장 공시가격이 있는 D사의 사채를 매입하였다. 사채의 계약조건에는 D사의 지배회사가 제공하는 금융보증계약이 포함되어 있다.

〈분석〉 이 사례에서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일부이다. 사채의 계약조건에 금융보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건이 사채의 공시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례 5] 금융보증 - 후속적으로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현황〉 J사는 활성시장 공시가격이 있는 K사의 사채를 매입하였다. 9개월 후 J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의 은행에서 사채에 대한 금융보증계약을 매입하였다.

〈분석〉 이 사례에서 은행으로부터 매입한 금융보증계약은 사채의 일부가 아니다. 금융보증계약을 사채의 최초 인식 이후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취득하였고, 사채의 계약조건에 금융보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사채의 공시가격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채 계약조건 변경도 없었으므로 J사는 지급한 프리미엄을 채무상품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사례 6] 금융보증 - 법규에서 요구되는 경우

〈현황〉 E사는 대출을 실행하였다. 대출계약을 다루는 국내 법규는 대출기관이 금융보증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E사는 제3자로부터 금융보증을 취득하고 지급한 프리미엄을 대출 거래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분석〉 이 사례에서 E사는 대출 실행을 허가 받기 위해 금융보증계약을 매입하여야 하므로 금융보증계약은 대출의 일부분이다.

[사례 7] 금융보증 - 채무자의 지배회사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현황〉 G사는 채무자 H사에 대출을 실행하였다. 9개월 후에, H사의 신용도가 떨어지자, G사는 H사의 지배회사와 H사 대출에 대한 금융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G사는 어떠한 프리미엄도 지급하지 않았다.

〈분석〉 이 사례에서 금융보증계약은 대출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출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 H사의 지배회사는 금융보증이 실행되어 대지급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종속회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 G사는 분리하여 인식하여야 하는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금융보증계약이 채무상품의 일부분인 경우 회계처리

금융보증계약이 채무상품의 일부분이라고 판단한다면, 금융보증계약 보유자는 해당 계약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대신 보증의 효과를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측정과 미래 현금흐름 추정, 손상 판단 시 고려한다.

(3) 금융보증계약이 채무상품의 일부분이 아닌 경우 회계처리

KPMG의 견해로는 금융보증계약이 다음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회계처리하는 정책을 선택하여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다.

- 금융보증계약을 단기거래목적으로 보유한다. (단기거래금융자산에 대한 K-IFRS 1109의 요구 사항을 유추 적용)
- 금융보증계약의 보증 대상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다. (회계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목적)

상기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금융보증계약을 프리미엄 선급금과 보상권(K-IFRS 제1037호 '충당 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이하 'K-IFRS 1037')을 유추 적용)으로 인식한다.

아래에서는 K-IFRS 1037을 유추하여 금융보증계약을 프리미엄 선급금과 보상권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에 대해 설명한다.

1) 최초 계약시 회계처리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기보유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보증계약을 취득한 경우 보유자는 지급한 프리미엄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 둘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다.

- Approach 1 : 지급한 프리미엄의 전부나 일부를 보상권의 취득 대가로 보아, 대가를 보상권 취득에 배분한다.
- Approach 2 : 지급한 전체 프리미엄은 보증 기간에 걸쳐 제공되는 보증 서비스에 대한 선급 대가로 간주하여 보상권에 배분하지 않는다. 보상권은 별개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만약 회사가 신용 손상된 기보유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보증계약을 취득하였다면, 보유자는 지급한 프리미엄의 일부를 보상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Approach 1만 적용 가능)

[사례 8] 지급한 프리미엄

〈현황〉 2018년 12월 31일에 D사는 대출의 일부분이 아닌 금융보증계약을 10원에 취득하였다. 취득 시점에 대출은 신용이 손상되지 않았으며, 해당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4원이다.

〈분석〉 지급한 프리미엄 10을 보상권과 선급금으로 안분하여 인식한다. (Approach 1 적용)

차변		대변	
보상권	4	현금	10
선급금	6		

2) 후속 회계처리

보상권의 회계처리는 보고기간말 현재 보유자가 금융보증계약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손상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① 보상권 : 손상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고기간 말 현재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손상 사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K-IFRS 1109에 따라 손실충당금을 인식한 경우, 신용손실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면, 관련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할 때 보상권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K-IFRS 1037.53)

보상권의 최초 인식시점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손상 사건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인식하는 보상권의 금액은 기대신용손실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금융보증계약이 보증하지 않은 항목이나 금액에서 신용손실이 인식된다면, 보상권은 금융보증계약이 보증하는 신용손실에 국한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사례 9] 손상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상권 회계처리

〈현황〉

2019년 1월 1일에 N은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의 B사 발행 사채를 취득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다. (유효이자율 10%)

- 취득금액 : 7,513원
- 이자율 : 0%
- 만기 : 2021년 12월 31일 (3년)
- 만기시 지급액 : 10,000원

사채는 손상되지 않았으므로 N은행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고 있다.

2019년 1월 1일에 N은행은 제3자인 C 보험사와 다음과 같은 조건의 금융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 B사가 2022년 1월 31일까지 N은행에 10,000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 경우 C사가 10,000원을 한도로 N사에 지급함
- B사가 10,000원보다 적은 금액을 N은행에 지급한다면, C사는 10,000원과 N사가 수취한 금액의 차이를 N은행에 지급함
- C사가 N은행에 지급한 후, B사가 후속적으로 N은행에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N은행은 그 금액을 C사에 지급하여야 함 - 즉, N은행은 실제로 입은 손실보다 큰 금액을 보상 받지 않음

N은행은 금융보증계약이 사채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보며 이를 K-IFRS 1037의 변제에 관한 지침을 유추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2019년과 2020년 말 현재 관련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2019년 말	2020년 말(*)
사채의 총장부금액	8,264	9,090
손실충당금	(25)	(27)
사채의 상각후원가	8,239	9,063
보상권의 현재가치	(27)	(29)
기대신용손실을 한도로 하는 보상권의 현재가치	25	27

(*) 신용손실 추정치에는 변동이 없으며, 현재가치 증가분만 인식됨

〈회계처리〉

2019년 12월 31일 N은행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변		대변	
손상차손 (PL)	25	손실충당금 (BS)	25
보상권 (BS)	25	보상권 (PL)	25

2020년 12월 31일 N은행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변		대변	
사채 총장부금액	826	이자수익	826
손상차손 (PL)	2	손실충당금 (BS)	2
보상권 (BS)	2	보상권 (PL)	2

② 보상권 : 손상사건이 발생한 경우

보유자가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손상 사건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보상을 받을 무조건적인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보상권을 수취채권(receivable)으로 인식한다.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무조건적인 계약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보유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을 맺고 있다. 그리고
- 보고기간 말 현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손상 사건이 발생하였고, 발행자가 그 청구권에 반박하지 않는다.

보상 채권(receivable)은 기대현금흐름을 금융보증계약 발행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측정한다. 기인식한 보상권의 장부금액과 보상 채권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 보상권 : 표시와 공시

보유자가 금융보증계약에 K-IFRS 1037의 변제에 대한 지침을 유추 적용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보상권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을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한다.

- K-IFRS 1109에 따라 결정된 신용손실(신용손실환입 또는 신용차익을 포함)의 항목으로 표시
- 다른 적절한 항목으로 표시

상기에서 제시하는 회계정책 중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보상권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중요하다면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K-IFRS 1001.97)

KPMG contacts

KPMG 삼정회계법인
Department of Professional Practice / IFRS COE

DPP

현승임 상무

T. (02)2112-0528

E. shyun@kr.kpmg.com

박은숙 상무

T. (02)2112-0673

E. eunsukpark@kr.kpmg.com

한진희 이사

T. (02)2112-6876

E. jinheehan@kr.kpmg.com

한상현 이사

T. (02)2112-7072

E. shan1@kr.kpmg.com

김응주 S.Manager

T. (02)2112-3227

E. eungjookim@kr.kpmg.com

이승훈 S.Manager

T. (02)2112-7874

E. seunghoonlee@kr.kpmg.com

양유정 S.Manager

T. (02)2112-6940

E. youjeongyang@kr.kpmg.com

국민경 Manager

T. (02)2112-6601

E. mkook1@kr.kpmg.com

이예슬 Manager

T. (02)2112-3144

E. yaeseullee@kr.kpmg.com

kpmg.com/kr

© 2019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